

#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본 안내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전 작성되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하며,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본주택에서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자는 반드시 사업주체에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각 기관별 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 일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하며, 견본주택에서 청약 신청시 자격인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신청자는 특히 '신청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숙지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문상의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지자체 협의 및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I 공급개요 및 일정 안내

- 공급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81-18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551세대 / 지하3층 ~ 지상25층 4개동
- 공급개요

[단위 : m<sup>2</sup>, 세대]

구분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세대별 계약면적(m <sup>2</sup> )			기타공용 (주차장포함)	계약면적	공급세대수	입주시기 (예정)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민영 주택	59.8539	59.8539	18.0056	77.8595	32.2423	110.1018	46	27년 8월 (예정)
	84.9850A	84.9850	22.9887	107.9737	45.7800	153.7537	273	
	84.8349B	84.8349	23.1773	108.0122	45.6992	153.7114	144	
	113.7801A	113.7801	29.9093	143.6894	61.2915	204.9809	63	
	113.4179B	113.4179	30.4095	143.8274	61.0963	204.9237	25	
합계							551	

※ 상기 공급개요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시 경기도 가평군청 건축과의 승인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대상 세대수 (전용 85m<sup>2</sup>이하 주택건설량 10% 범위)

[단위 : 세대]

구분	59			84A			84B			소계
	46			273			144			
기관추천 특별공급	장애인	경기도	1(5)	4(20)	2(10)	7(35)				
		서울특별시	-	2(10)	2(10)	4(20)				
		인천광역시	-	1(5)	1(5)	2(10)				
		소계					13(65)			
	국가유공자 등	1(5)	4(20)	2(10)	7(35)					
	장기복무 제대 군인	1(5)	7(35)	3(15)	11(55)					
	10년 이상 복무 군인	1(5)	6(30)	2(10)	9(45)					
	중소기업근로자	-	3(15)	2(10)	5(25)					
합계			4(20)	27(135)	14(70)	45(225)				

※ 괄호 ( ) 안의 수는 예비입주자 세대수입니다.

## II 공급일정 안내 [예정]

구분	일정 (예정)	비고
입주자모집공고(예정)	2024.10.04. (금)	* 일간신문 및 당사 홈페이지( <a href="https://sujain-chungpyong.co.kr/">https://sujain-chungpyong.co.kr/</a> )
견본주택 개관(예정)	2024.10.11. (금)	* 견본주택 위치 :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74번지 ※ 견본주택 운영 사항은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문의 : 1551-2338
특별공급 청약(예정)	2024.10.14. (월)	* 인터넷 신청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09:00~17:30)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하나 가급적 인터넷 신청을 권함. * 견본주택 신청 시(10:00~14:00), 자격인증 서류 지참 필수
당첨자 동·호수 및 예비입주자 발표(예정)	2024.10.22. (수)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개별조회

※ 상기 일정은 안허가 및 업무 추진 중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신청 전 당사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후 한국감정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로 특별공급 접수일에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III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하여 사업 주체에 통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청약통장 가입 요건(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자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납입인정금액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구 분	경기도 및 가평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 가입기간 및 예치금액 인정 등 신청자격 판단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예정일인 **2024년 10월 14일(금)**입니다.
-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수행합니다.
- ※ 해당 주택형별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동일 주택형 내에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 선정되지 아니한자에게 공급하고, 이후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신청자 모두를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합니다.

#### ■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 ■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7의 3에 의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이며 수도권 기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상기 주택가격은 동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릅니다)
  - ※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3조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규칙 53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할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 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IV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추천 시 경쟁률이 1:1을 초과하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은 기관추천 우선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
- 당첨자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의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으로 시행합니다.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2에 의거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미계약 등으로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는 배정물량의 500% 범위에서 선정합니다.

## V

## 유의사항

- 사업주체는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당첨자가 청약 신청 시 기재한 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므로, 당첨자에 한해 신청자격 확인 서류를 통해 신청자격을 검증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취소, 통장효력 상실, 당첨자 명단관리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에 신청한 경우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통장장효력 상실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타입 변경 등)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청약 불가자의 견본주택 방문 신청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 불가하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추가로 접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제 시 계약금 납부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당첨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2024.10.04.(금) 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적격 대상자 명단을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2024.0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관계법령과 상이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현장	건본주택
<p style="text-align: center;"><b>SUJAIN</b>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p> 	<p style="text-align: center;"><b>SUJAIN</b> 청평 수자인 더퍼스트</p>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산81-18번지 일원	주소: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374번지

※ 건본주택 관람 및 운영방법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모집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s://sujain-chungpyong.co.kr/>

※ 자세한 사항은 대표번호 1551-233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